

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. 5. 1.

예천군의회 의장



1. 개정이유

- 주민의 임신·출산·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우리군 인구 증가와 저출산·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·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산장려금 등 지원(안 제4조)

-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출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신설
→ 2019. 1. 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
나. 지원대상의 범위(안 제5조)

- 출산장려금의 지원 범위를 명시
 -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함께 등재된 자녀의 순위에 따라 지원

3. 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,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, 모자보건법 제3조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- 다. 예산현황 : 54백만원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5월 7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murayzzang@korea.kr

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대상은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로서”를 “지원대상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출생아.

이 경우,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첫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특례) ① 제4조 제1항제1호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첫째자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

날이 포함된 달부터 잔여기간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.

② 제1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 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본다.

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신청 시 별도안내	
신청인 (대리 신청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출산자와의 관계	휴대전화	집전화	
	도로명주소 (주민등록주소지)					
출산자 (산모)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휴대전화	집전화	
	도로명주소 (주민등록주소지)					

※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“출산자”란 작성 생략 /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

가족 사항	세대주와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동거여부	주소 (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)
		본인			[] 에 [] 아니오
	배우자			[] 에 [] 아니오	
	자			[] 에 [] 아니오	
	자			[] 에 [] 아니오	
	자			[] 에 [] 아니오	

지방자치 단체 서비스	[] 출산 장려금	()의 자녀 중 (<input type="checkbox"/> 출생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입 <input type="checkbox"/> 입양) 일자(. . .)이름() <input type="checkbox"/> 첫째 <input type="checkbox"/> 둘째 <input type="checkbox"/> 셋째 <input type="checkbox"/> 넷째아 이상
	[] 출생아 건강보험금	<input type="checkbox"/> 셋째 자녀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문화 자녀 첫째 이상 (이름 :)
	[] 출산축하용품	<input type="checkbox"/> 첫째 자녀 이상
	[] 식품꾸러미	<input type="checkbox"/> 셋째 자녀 이상

전국 공통 서비스	서비스명	출생자 성명	신청 사항			
	양육수당	※ 출생자 모두 기재	[] 가정양육수당 [] 농어촌양육수당	1. 국외출생 여부 : [] 에 [] 아니오		
	아동수당		[] 아동수당	2. 복수국적 여부 : [] 에 [] 아니오		
	해산급여		[] 해산급여(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)	*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		
	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		[] 출산비용 지원(등록장애인)			
	전기료 경감		[] 출산가구 [] 다자녀(3명 이상)	고객명 :	고객번호 :	
	다자녀(3명이상) 도시가스료 경감		[] 도시가스사업자명 :	고객명 :	고객번호 :	
다자녀(3명이상) 지역난방비 경감	[] 지역난방사업자명(코드) :		고객명 :	고객번호 :		

급여 계좌	성명	출산자와의 관계	대상서비스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참고사항 등

※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,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

결과 통지 방법	[] 문자 서비스(SMS) : 결정사항,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----------	--

신청인(대리 신청인) 성명 : _____ 20 ____년 ____월 ____일
(서명 또는 인)

예 천 군 수 귀하

※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, 지침 등의 개정·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출산장려금 등 지원) ①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거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태아의 경우는 태아별로 각각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(생 략) 	<p>제4조(출산장려금 등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1.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</u> <u>첫째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2</u> <u>년간 지원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(현행 제1호와 같음) 3.(현행 제2호와 같음) 4.(현행 제3호와 같음)
<p>제5조(지원대상의 범위)출산장려금 <u>지원대상은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로서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 	<p>제5조(지원대상의 범위)----- -----<u>지원대상은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

<p>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가 출산하여 군 관내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출생아. 이 경우,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【 관련 근거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□ 모자보건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예천군 출산장려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가. 내 용 : 첫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

나. 관련조문 : 예천군 출산장려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인근 시군에서 젊은 층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출산율 증가예상치와
연차적 출생아 증가 대비
- 출생아수 : 연간 첫째아 출생인원으로 추산
- 연도별 출생아 현황(2019년 이후 추산치)

(단위: 명)

구 분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첫째 아	95	94	90	118	180	200	220	220	230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19)	2차년도 (2020)	3차년도 (2021)	4차년도 (2022)	5차년도 (2023)	합계
		세입	-	-	-	-	
세출	○출산지원금	54,000	240,000	264,000	264,000	276,000	1,098,000
□ 총 비용		△54,000	△240,000	△264,000	△264,000	△276,000	△1,098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19)	2차년도 (2020)	3차년도 (2021)	4차년도 (2022)	5차년도 (2023)	합계
국비		-	-	-	-	-	-
도비		-	-	-	-	-	-
군비	일반회계	54,000	240,000	264,000	264,000	276,000	1,098,000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금	-	-	-	-	-	-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54,000	240,000	264,000	264,000	276,000	1,098,000

5. 부대의견

6. 작성자 : 보건소 간호5급 윤귀희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분	예산액(원)	산출내역(원)
계	1,098,000,000	첫째아 출산지원금 지급 산출내역
2019년	54,000,000	100,000원 × 6월 × 180명 × 0.5
2020년	240,000,000	100,000원 × 12월 × 200명
2021년	264,000,000	100,000원 × 12월 × 220명
2022년	264,000,000	100,000원 × 12월 × 220명
2023년	276,000,000	100,000원 × 12월 × 230명